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35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지원과), 02-970-6055

제정 2012. 3. 1.
개정 2017. 7. 11.
개정 2018. 8. 16.
전부개정 2019. 9. 18.
개정 2021. 3. 4.
개정 2021. 9. 1.
학칙개정 2021. 10.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제86조에 따라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개정 2021. 10. 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9. 1.>

②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각 장학단체 또는 장학금 기탁자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구분) ①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록금을 감면하는 장학금
2. 각종 교외단체(또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3. 재단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4. 매월 또는 매학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 <신설 2021. 3. 4.>
 가. 학내 각종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
 나. 학업장려 및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5. 그 밖의 장학금

② 장학금의 종류별 분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장학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2. 장학금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각종 장학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무처장·기획처장·학생부처장 및 학생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그 밖의 위원은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따라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복지팀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장학금

제8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방법) 모든 장학금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개 학기로 한다.

제11조(이중수혜 금지)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장학생

제12조(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경제사정이 곤란하여 학비마련이 어려운 사람
3. 등록금의 법정 감면 대상자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
4.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5. 품행이 바른 학생으로서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사람
6. 그 밖에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장학생 선정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

학생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3. 4.>

1.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해제일이 속한 학기와 그 다음 학기(다만, 휴학기간은 제외)
2. 미등록 휴학 후 복학 및 재입학한 사람의 해당 학기
3. 장학금을 이중혜택 받은 사람(다만, 이중혜택을 허용하는 장학금은 수혜 가능)
4. 학생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5.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개정 2021. 3. 4.>

제14조(장학생 배정) ① 총장은 장학금 지급방침에 따라 대학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장학생 수 또는 장학금액을 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② 교외장학금은 장학금을 기탁한 장학단체나 개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이 없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배정한다.

제15조(자격상실)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2. 등록을 마치지 않고 휴학한 경우
3. 학사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장학금 급여신청서를 허위기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제16조(선정) 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7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학업에 정진하여야 하며 학칙을 성실히 이행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 2019.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5호는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97호, 2021.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21. 9. 1.>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